

「2026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내용

전년 대비 주요 변동 내용

- [확대] 태아산모검진 복지점수 자녀 수 당 100점 배정
(기존) 임신(또는 출산) 회 당 100점 → (변경 후) 자녀 수 당 100점

1. 적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 단, 개인별 자율항목 점수 청구 기간: 복지시스템 개통 이후부터 2026. 12. 9.(수)까지

2. 복지항목 구성(기본항목+자율항목)

복지항목		구 성	내 용
기본 항목	필 수 기본항목	▶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 제공)	- 생명/상해 보장보험
	선택 기본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특정질병 진단비, 치아보험, 실손의료비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선(先)사용 후(後)정산)	- 수술·입원비 및 대상포진 진단비, 배우자·자녀 실손 의료비

3.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포털 휴직처리 방법

휴 직	구 분	복지포털 휴직처리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육아휴직, 불임·난임휴직(1년 이내), 가족돌봄휴직(1년 이내), 국외 파견(6개월 미만)	○ 재직자와 동일 적용	✗
행방불명(3개월 초과), 고용휴직,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국외 파견(6개월 이상)	○ 최저보상안 적용 - 기본항목(단체보험) 적용 - 자율항목 미적용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 적용 배제 -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

※ 기관담당자는 해당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시스템 처리 필요

4. 복지점수 배정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특별건강검진점수
<input type="radio"/> 전 직원 1,200점 일을 배정	<input type="radio"/> 15년 미만 150점 <input type="radio"/>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0점 <input type="radio"/>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0점 <input type="radio"/> 25년 이상 ~ 30년 미만 300점 <input type="radio"/> 30년 이상 350점 * 실무수습 미배정	<input type="radio"/> 배우자 100점 배정 <input type="radio"/> 직계존속 1인당 100점 배정 <input type="radio"/>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녀: 100점 - 둘째 자녀: 200점 - 셋째 자녀 이상: 300점 <input type="radio"/> 출산 축하 복지점수(자녀당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녀: 1,000점 - 둘째 자녀: 3,000점 - 셋째 자녀 이상: 5,000점 <input type="radio"/>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지원 복지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지원: 500점 (재직 기간 중 1회만 지원) - 태아 · 산모검진 지원: 100점 (자녀 수 기준 1명당 100점) 	<input type="radio"/> 격년 3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검진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5. 기관(학교) 담당자 유의사항

정년(명예) 퇴직자 등 인사변동 사전 처리(*인사변동에 따른 환수금 발생 방지)

- 연도 중 신분변동이 예정된 공무원은 반드시 복지점수를 월할계산하여 배정
(2월말 퇴직자의 경우 2/12로 배정)

-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적용 시 할인 전 금액(액면가)으로 인정
- 조정점수 신청 이후 영수증 청구 필수(조정점수 신청만 할 경우, 잔여점수로 남아있음)
- 자율항목 청구기간 엄수(*2026. 12. 9.(수)까지 청구 완료, 영수증 대리청구 포함)
- 실무수습 근속복지점수 배정 주의(조정점수로 차감해야 함)
- 학교(기관)담당자는 소속 교직원 대상으로 지침 안내 및 홍보 철저
 - : 복지점수는 소급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사용독려 공문 공람, 내부 메시지 전송, 문자 등 활용하여 미사용 점수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
- 연도중 신분변동 등으로 인한 건강검진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건강검진 실시 권장
 - : 건강검진비 또한 청구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마감일(12. 9.) 이후 신청 및 지급 불가

「2026년 단체보험 운영」 주요 내용 요약

1. 단체보험 주요 사항

- 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 개인별 가입내역 확인 및 보험청구 방법
 - : 맞춤형복지업무포털(www.gwp.or.kr) > 로그인 > 재직자 단체보험 > 보험조회(청구)
 -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문의처: DB손해보험 031-928-7290/7341(FAX: 0505-180-0430)
- 단체보험 변경사항

구성안	2025년	2026년
생명/상해 보장보험	1억 / 1.5억	<u>5천만원</u> / 1억 / 2억
수술비 및 입원일당	수술비 (종류구분없이)50만원, 입원일당 의료비 3만원 *수술비+입원일당 통합운영 ※ 개인 필요에 따라 미가입 가능 (종류별) 10만원~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술비·입원비: 수술비 50만원, 입원일당 의료비 3만원대상포진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 확정시(최초 1회) 100만원 *수술비·입원일당+대상포진 진단비 통합운영 ※ 개인 필요에 따라 미가입 가능

※ 기타 주요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 등 실제 보상 관련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조

2. 향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주체
2026. 2.	- 2026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내역 및 문의처 안내 공문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2026. 8	- 2026년도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한 보험상품 등록 요청	공무원연금공단
2026. 9. ~ 10.	- 2026년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선택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026. 10.	- 기관(학교) 담당자 보험선택 마감	각급학교(기관)
2026. 10. ~ 12.	- 단체보험 통합계약 협약체결 및 입찰	공무원연금공단
2026. 12 ~ 2027. 1.	- 단체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부	공무원연금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 공무원연금공단 일정에 의해 시기 변경 가능

「2026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질의응답

I

복지점수 배정

질문: 배정인원이 아닌데 6단계에서 조회가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단계에서는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보험을 선택하신 후, 8단계에서 삭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또는 예정자) 병역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6단계에서 보험을 임의로 설정하고 8단계 배정완료 후 인사변동 개별처리> 휴직/복직탭에서 1월 1일자(또는 휴직예정일)로 대상자 병역휴직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II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질문: 맞춤형복지비 지급 계좌 및 청구 방식 변경 방법은?

답변: ① 계좌 확인: 복지점수 청구>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 본인 계좌 여부 확인 선택> 저장
② 계좌 변경: 복지점수 청구>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 계좌번호 입력> 본인 계좌 여부 확인> 저장
③ 카드청구 방법 선택 : 복지점수 청구> 계좌 및 청구 방식 변경> 자동청구/수동청구 선택> 저장

질문: 이미 맞춤형복지로 청구한 카드 결제 건이 취소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승인 단계까지는 담당자의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승인취소, 접수취소) 그러나 지급준비 및 지급완료 단계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해당 금액 이상의 다른 영수증(자율항목에 해당)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 전입/전보 처리방법?

답변: 전출기관에서 ‘전보’처리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별도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 발령은 전출이 아니라 전보)

질문: 교직원의 인사변동을 잘못 처리 했을 경우 처리방법?

답변: 복지점수관리> 인사변동관리> 인사변동 처리현황/취소> 조회 후 해당 교직원 선택> 인사변동취소 선택 ※ 인사변동 처리 현황 조회 시, 반드시 산하기관 포함 체크

질문: 교직원의 관내 전보를 잘못 처리 했을 경우 처리방법?

(다른 직원을 전보 보낸 경우, 기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

답변: 전입 받은 기관에서 인사변동취소 처리

질문: 환수내역 등록 방법은?

답변: 인사변동처리 및 배정수정으로 인하여 배정된 포인트가 줄어들 경우, 환수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여포인트가マイ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환수대상 금액이며 포인트의 사용내역 및 배정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학교(기관)의 세외계좌로 환수 조치하신 후, 시스템 상에 환수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분기별 정산반납 일정에 맞추어 공문 보고 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지점수관리 > 환수관리 > 검색 > 환수대상자 조회 > 잔여점수 클릭 > 환수금액 및 환수 일자 입력 > 저장
- ☞ 회원정보 관리 > 회원관리 > 복지점수 이용 > 잔여점수 0 확인

질문: 퇴직자의 환수내역 등록이 안됩니다.

답변: 퇴직자의 정산완료 처리 후에는 잔여점수의 청구 및 환수내역 등록이 제한되므로 잔여점수 소진 및 환수내역 등록 후에 정산완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산 완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취소한 후 다시 퇴직일자 입력하여 ‘정산중’인 상태에서 환수내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정산완료 취소: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인사변동 처리현황/취소 > 조회 후 해당 교직원 선택 > 인사변동취소 선택
- ☞ 퇴직처리: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인사변동 개별처리 > 퇴직 > 해당 교직원 조회 > 퇴직일자 입력 > 인사변동 예상조회
- ☞ 환수등록: 복지점수관리 > 환수관리 > 검색 > 환수대상자 조회 > 잔여점수 클릭 > 환수금액 및 환수일자 입력 > 저장 > 잔여점수 0 확인
- ☞ 정산완료 처리: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인사변동 개별처리 > 퇴직 > 처리 현황 탭 > 조회 > 해당 교직원 ‘정산 중’ 클릭 > 정산 완료 버튼 클릭

질문: 근속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따라 배정됩니다.(NEIS 1월 급여자료 참고) 복직, 승급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근무연수가 바뀌더라도 근속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실무수습의 경우 근속 복지점수는 미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2025. 8월 출생, 2026. 1. 1. 이전에 등본 등재, 2026년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시 가족복지점수 누락 된 경우 가족복지점수 추가로 배정이 되나요?

답변: 2026. 1. 1.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었지만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배정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점수 지급 대상자인지, 충복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배정) 2026. 1. 1.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배정기간 내 가족복지점수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연중 결혼, 출산, 근속년수 변경 등은 2026년도 포인트 배정시 반영 하며, 2026년도 연중 변동되는 가족은 2027년도 포인트 배정 시 반영

※ 연도 중 배정포인트 변경 시, 이중배정 여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배정자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놓을 것)

질문: 본인 계좌 여부에서 ‘오류’가 납니다.

답변: 개명 등으로 인하여 통장의 예금주명과 시스템상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실제 사용하시는 성명으로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예금주명을 변경하실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고 맞춤형복지사이트의 성명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주민번호/성명 정정 신청

질문 : 영수증 청구 시 영수증 종류를 ‘카드전표’로 선택하여 청구하면 오류 메시지가 납니다.

답변: 맞춤형복지 사이트에 등록한 카드의 결제 건을 청구하실 때, 입력한 카드 승인 번호와 카드청구에서의 카드 사용내역의 승인번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수증 종류를 ‘카드전표’가 아닌 ‘일반영수증’으로 설정하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 교직원이 새로 전입(신규 또는 전보) 시 담당자가 하여야 할 일은?

- 답변: 1. 포인트 배정 확인(근속, 가족점수, 월할 배정)
2. 단체보험 선택(수기조사 후 내부결재) 및 보험료 차감 확인
3. 시스템 상 회원정보 입력(회계코드 및 직종, 계좌번호)

- ※ 장학사에서 **교장**으로 임용 시, 회계코드 및 직종 변경 : 교육전문직원 → **교원**
- ※ 회계코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중 택 1
- ※ 직종: 국공립교원, 전문직, 지방일반직 중 택 1

질문: 기관운영자 변경 시 처리방법은?

- 답변: 운영자 권한은 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세가지입니다. 기존 운영자가 로그인하여 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페이지에서 각각 운영자 권한을 승계합니다.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전임자가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특수학교, 고등학교, 직속기관, 본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 ☞ 초등학교의 경우 공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교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별도 시스템 운영 및 운영자 승계(중고병설의 경우에도 동일함)
 - ☞ 기관현황관리 > 운영자 조회 및 등록 > 변경하고자 하는 운영자명 선택 > 운영자 승계 선택 > 승계할 운영자 검색한 후 신규 등록 > 완료

질문: 난임지원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난임지원비는 [서식6호] 신청서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당해연도 조정점수로 재직 중 500P를 배정받고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세부 조건별 찾기> 지역선택> 특정수술별탭> 난임시술>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 재직 중 1회 배정이므로 난임지원비 지급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배정

질문 : 태아·산모 검진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태아·산모 검진비는 [서식7호] 신청서와 출산 전일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 후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당해연도 조정점수로 자녀당 100P를 배정받고 사용 가능합니다.
- ☞ 자녀 1인당 1회 배정이므로 태아·산모검진비 지급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배정

질문 : 전보처리를 했는데 전출처리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입기관 선택 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이나 공무직이라고 쓰여진 기관으로 처리할 경우 타기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공무원탭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III

건강검진비

질문 :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서식9호] 신청서와 건강검진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정 점수 신청하면 기관담당자가 당해연도 조정점수로 300P한도내에서 실제 검진 비용만큼 배정합니다. 배정된 조정점수를 영수증 청구까지 하여야 사용됩니다.

질문 : 간편결제(페이코) 사용자는 건강검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서식9호] 신청서와 건강검진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정 점수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당해연도 조정점수로 300P한도내에서 실제 검진 비용만큼 추가로 배정합니다. 추가로 배정된 점수는 자율항목점수에 합산되어 사용 가능합니다.(간편결제 사용자는 영수증 청구 불가합니다.)

질문 : 건강검진 조정점수 신청 후 승인되면 끝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조정점수 승인은 점수만 들어간 것으로 조정점수 승인 이후 영수증 청구 절차를 거친 후 승인처리되어야 합니다.

질문 : 건강검진비 신청 시 30만원 전액지급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한금액이 30만원이며, 실제 건강검진비용(본인부담금)만큼 지급합니다.

질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별도로 개인이 개별로 검사한 경우 건강검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올해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이고,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에 맞게 검사한 경우 건강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 퇴직자의 경우 조정점수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퇴직일자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조정점수 배정이 불가합니다.

퇴직처리 취소하고 조정점수 입력 후 다시 퇴직처리

- ☞ 퇴직처리 취소: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인사변동 처리현황/취소 > 조회
후 해당 교직원 선택 > 인사변동취소 선택
- ☞ 퇴직처리: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인사변동 개별처리 > 퇴직 > 해당교직원
조회 > 퇴직일자 입력 > 인사변동 예상조회

질문 : 건강검진비 청구금액이 원단위인데 조정점수로 원단위 배정 가능한가요?

답변: 조정점수는 십원 단위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1원 단위는 절사해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170,150원이라면 조정점수 170.15로 입력

질문 : 퇴직자 및 전출자의 건강검진비는 월할 배정하나요?

답변: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는 재직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해야하며
월할배정이 아닌 3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검진한 비용을 배정합니다.

질문 : 휴직자도 건강검진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답변: 최저보상안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자는 건강
검진비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 : 출수년생인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연기하여 올해 받는 경우 건강검진비 청구 가능
한가요?

답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와 별개로 출생년도(짝수, 홀수)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청합니다.

* 2026년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질문 : 연도 중 신규임용자, 타시도전입자, 병역휴직 후 복직자, 최저보상안적용 대상자는 개인이 보험 안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① 신규임용자, 타시도전입자, 병역휴직 등 연도중 복직자 보험안 선택 가능
 ② 최저보상안적용 휴직자는 휴직처리 시 “기본보험”으로 자동 적용되며 복직 시에 보험안 선택 가능

※ 연도 중에 새롭게 보험선택을 한 경우 (신규임용자, 타시도전입자, 최저보상안 및 적용배제 휴직 후 복직자)에도 보험안 선택 후 선택 결과 출력하여 서명 받고, 맞춤형복지시스템에 기관운영자가 입력해야 함
 - 시스템에 보험선택안을 입력한 후에는 인사변동 기간 중에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질문: 단체보험 사전선택 기간 내에 미선택자에게 기본보험(최저보상안)을 적용하는 근거는?

답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보험(기관최저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5항)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질문: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결제를 보험기간 종료된 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 진료일자 기준 ○ / 치료비 결제일 기준 ×

질문: 보험상품 선택을 잘못했는데 변경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보험상품 선택기간 이후에는 보험상품 선택 · 변경이 불가합니다.

※ 특히, 의료비보장 보험 ‘가입’ 선택 시 보험선택 기간 이후 개인보험 가입 등의 사유로 가입 변경 불가